

의안번호	제 310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12월 일 (제 344 회)

**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임회무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5년 11월 일

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회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1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년 11월 23일

발 의 자 : 임회무, 엄재창, 김영주,  
연철흙, 윤은희, 최광옥,  
임순묵

## 1. 개정이유

- 저출산 방지와 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태아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부여와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자기계발 시간 마련 및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 특별휴가 신설(안 제18조제3항)
  -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휴가 : 5일
- 장기근속 지방공무원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신설(안 제18조제8항)
  - 1)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
  - 2)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15일
  - 3) 재직기간 30년 이상 : 15일
-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(안 제18조제9항)
  -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: 1일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총무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없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#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
- ⑧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10일,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15일,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- ⑨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특별휴가) ①~ ②(생략)	제18조(특별휴가) ①~ ②(현행과 같음)
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	③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
④ ~⑦(생략)	④ ~ ⑦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⑧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10일,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15일,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<신설>	⑨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공무원법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, 휴직기간·정직기간·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.

③ 해당연도에 결근·휴직·정직·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.

제7조의3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③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

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
1.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(이하 "임신기간"이라 한다)이

11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

2.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
3.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
4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
5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
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.

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